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09
----------	-----

2023년 5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원태 의원 외 32명
- 나. 제안일 : 2023년 3월 29일
- 다. 회부일 : 2023년 4월 3일
- 라. 상정일 :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4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원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 서울시 산하 일부 자치구에서는 최근 들어 5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 시는 3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산하 자치구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50일로 늘렸고, 전주시에서는 40년 이상 재직자 10일 휴가를 추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 서울시 본청 근무 공무원들이 자치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장기재직휴가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일부 타시도 지자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를 개선하는 사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제1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입법예고(2023. 4. 6. ~ 4. 10.)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운영중인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 기간에 따라 확대(안 제24조제11항)하려는 것임.

※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동일한 적용을 위하여, 동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되어 있는 바, 연계 처리 가능성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5년 이상~10년 미만	해당없음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	15일
20년 이상~30년 미만	20일	25일
30년 이상	20일	25일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⑩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⑪ -----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 15일----- ----- ----- 25일----- ----- ----- ----- -----
⑫ ~ ⑱ (생략)	⑫ ~ ⑱ (현행과 같음)

- 동 개정안은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 및 휴가기간 부여 일수를 확대하여 공직 생활을 위한 재충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제1항1)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는 부합한다고 하겠음.
- 다만, 장기재직 휴가 일수 확대 시행에 따른 국가직 공무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장기재직 휴가에 따른 대직자 업무 과중 해소방안 등 종합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서울시와 유사한 정도의 휴가를 운용하고 있는 바, 서울시 차원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 확대 시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17개 광역시·도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

(2023년 3월 기준)

구분	5년 ~ 10년미만	10년~ 20년 미만	20년 ~ 30년 미만	30년 이상
서울특별시	-	10	20	20
경기도	-	10	20	20
인천광역시	5	10	20	20
부산광역시	-	10	20	20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5	10	20	20
울산광역시	-		60일	
광주광역시	-	10	20	20
대구광역시	-	10	20	20
강원도	-	10	20	20
충청남도	-	10	20	30
충청북도	-	10	20	20
경상남도	-	10	20	20
경상북도	-	10	20	20
전라남도	-	10	20	20
전라북도	-	10	20	20
제주특별자치도	-	10	20	20
세종특별자치시	-	10	15	20

〈 서울시 및 자치구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

(2023년 3월 기준)

구분	5년 ~ 10년미만	10년~ 20년 미만	20년 ~ 30년 미만	30년 이상
서울특별시	-	10	20	20
강남구	-	10	20	30
강동구	5	10	20	30
강북구	-	10	20	20
강서구	-	10	20	20
관악구	5	10	20	30
광진구	5	10	20	20
구로구	5	10	20	30
금천구	5	10	20	20
노원구	5	10	20	30
도봉구	5	10	20	30
동대문구	5	10	20	30
동작구	-	10	20	20
마포구	5	10	20	20
서대문구	5	10	20	30
서초구	-	10	20	20
성동구	5	10	20	30
성북구	-	10	30	30
송파구	10	20	30	30
양천구	5	15	25	30
영등포구	-	10	20	20
용산구	5	10	20	20
은평구	-	10	20	20
종로구	-	10	20	30
중구	-	10	20	20
중랑구	5	10	20	30

- 아울러,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하여 근무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임기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장기재직 휴가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연간 휴가 예상 인원이 약 1,8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바, 특별휴가 확대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및 대체근무 인력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 재직 기간별로 일괄적으로 휴가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우선 5년이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를 도입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현황 (2023. 3. 31. 기준) 〉

(단위: 명)

구분	연간휴가 예상인원	5년이상 재직자 계	5년~9년	10~19년	20~29년	30년이상
총계	1,853	7,410	1,555	2,048	2,384	1,423

- 전체 현원은 10,302명임, 연간 예상인원은 전년도 휴가 사용률 참조하여 추정

※ 2022년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0~19년	20~29년	30년이상
대상 인원	5,834	1,982	2,555	1,297
휴가사용 인원	1,459	320	774	365
사용률	25.0%	16.1%	30.3%	28.1%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또한, 기존에 이미 특별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 예방을 위해서 현행 조례 부칙 조항에 명시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국은 기존 휴가사용 직원의 소급적용 관련, 특별휴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²⁾, 추후 적용대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휴가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시행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무원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장기재직 휴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재직 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³⁾과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6명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형식적 휴가일수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가를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임. 형식적인 숫자만 늘어난다고 사기 진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1항 ⑪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겉으로 드러나는 휴가일수보다는 유연한 조직문화, 보고체계 간소화 등 보이지 않는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하며,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휴가일수 확대의 의미가 퇴색 되지 않을 것임.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09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김원태,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도문열, 문성호,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정준호, 최민규, 홍국표
의원(33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 서울시 산하 일부 자치구에서는 최근 들어 5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 시는 3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산하 자치구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50일로 늘렸고, 전주시에서는 40년 이상 재직자 10일 휴가를 추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 서울시 본청 근무 공무원들이 자치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장기재직휴가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일부 타시도 지자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를 개선하는 사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1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 10년”으로, “10일”을 “15일”로, “20일”을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